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12
----------	------

제출년월일 : 2001. .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현행 조례 규정상 명확하지 않은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안산테크노파크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육성자금 지원절차중 비효율적인 부분을 간소화하는 등 동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지식·정보산업의 산업분류를 변경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맞추어 개정하고 디자인산업을 포함시킴 (안 제2조의 별표).
- 나.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안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을 융자대상업체에 명시함 (안 제5조).
- 다. 융자승인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시장이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평가한 후 지원하도록 간소화 함 (안 제8조).
- 라.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중 융자관련 심의기능을 삭제함 (안 제15조, 제16조).

□ 개정조례안 : 별 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 관련 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1. 11. 10 ~ 11. 20

□ 기타 참고사항 : 별 첨

- 현행조례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용자대상업체) 기금의 용자대상업체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2.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3.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4.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
5. 안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
6. 관계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7. 조례 제2조제4호의 지식·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8.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6조중 “매회 용자 실시전에”를 “매년 1월중에”로 한다.

제7조제1호의 별지 제1호서식(용자신청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의 조명 “용자승인”을 “용자대상선정”으로 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용자대상 선정)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용자대상 적격여부 등을 평가한 후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6조제3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회의는 기금운용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기업지원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기업지원과장 류 돈 현
	담당·팀장 직위·성명	자금지원담당 한 윤 희
	담당자 성명·전화	박 중 홍 (행정 2282)

〈별표〉

지식·정보산업(제2조 관련)

한국표준 산업분류	업 종 명	비 고
72100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209	기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40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4602	제품 디자인업	
74603	시각 디자인업	
74609	기타 전문디자인업	
87111	일반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87112	만화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87113	광고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 (용자대상업체) <u>안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인 업체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사용중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이거나 시장으로부터 공장용도사용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제조업 관련 벤처기업 및 지식·정보산업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요하지 아니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망중소기업체 2. 수출업체 3. 지역경제기여도가 높은 업체 4. 기타 시장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p>제5조 (용자대상업체) <u>기금의 용자대상업체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u> 2. <u>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u> 3. <u>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u> 4. <u>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기업</u> 5. <u>안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u> 6. <u>관계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u> 7. <u>조례 제2조제4호의 지식·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u> 8. <u>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p>제6조 (용자계획의 공고) <u>시장은 매회 용자 실시전에 용자금 총액, 용자대상자, 용자조건, 용자한도, 용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p>제6조 (용자계획의 공고) ----- <u>매년 1월 중에</u>-----</p> <p>-----</p> <p>-----</p> <p>-----</p>
<p>제8조 (용자승인) <u>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용자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유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8조 (용자대상 선정) <u>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용자대상 적격여부 등을 평가한 후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기금유자대상업체를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유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 ⑥ (생략)</p> <p>제16조 (위원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2. (생략)</p> <p>3. 유자대상업체 및 유자금액에 관한사항</p> <p>4. 유자대상 우선순위에 관한사항</p> <p>5.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사항</p> <p>제17조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p> <p>② ~ ③ (생략)</p> <p><별 표> 지식·정보산업(제2조 관련) (표 생략)</p> <p>(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 육성자금 유자신청서 (서식 생략)</p>	<p>제15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16조 (위원의 기능) ----- ----- -----</p> <p>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p> <p>제17조 (회의) ①회의는 기금운용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별 표> 지식·정보산업(제2조 관련) (별지 참조)</p> <p>(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 육성자금 유자신청서 (별지 참조)</p>